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5.3.(금)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3.(금)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 (가상) 예시 >

-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 불요
-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 가능
- (AI화장품) 화장품 업체 C사는 얼굴 색상 진단 위해 피부톤·피부질감·헤어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 가능
-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는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 필수 →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노주현 (044-203-488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3 May 2024**

**JOINT PRESS RELEASE ON THE SUCCESSFUL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1.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the founders of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are delighted to welcome the Republic of Korea (ROK) as DEPA's first new member.

**Finalisation of the ROK's Accession Process**

2. The ROK's successful accession is an important milestone. It follows the announcement of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the ROK's accession in June 2023 and the subsequent completion of the legal procedures in line with the DEPA accession process.

3. The DEPA commits Parties to ambitious disciplines on digital trade to advance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It also provides a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projects of mutual interest. The accession of the ROK is testament to the Agreement's open and inclusive nature. Expansion of the DEPA will add to the heft of the Agreement and provide greater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mongst Parties.

**Comments from DEPA Parties**

4. Chile's Undersecretary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s. Claudia Sanhueza said, "Chile welcomes today's announcemen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by the ROK.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is agreement, as it is the first DEPA member to join through an accession proces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ROK to enhance the potential of DEPA and to collaborate on projects of mutual interest in emerging areas that could impact digital trade".

5. New Zealand Minister for Trade Mr. Todd McClay said, "New Zealand welcomes the ROK's formal accession to the DEPA. The ROK has impressive experience in the digital economy and its accession demonstrates the DEPA's value as a pathfinder agreement for economies with high ambition for digital trade. New Zealand looks forward to working more closely with the ROK on these issues."

6. Singapore's Minister for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and Minister-in-charge of Trade Relations Grace Fu said, "Singapore warmly welcomes the ROK as the fourth Party to the DEPA. This is a key milestone for the DEPA. Through the DEPA, I look forward to deepening Singapore's collaborations on the digital economy with the ROK. As Chair of the ROK's Accession Working Group (AWG), Singapore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e ROK for the close cooperation with DEPA Parties throughout its accession process. I hope we can build on this momentum to ensure that DEPA remains an open and inclusive Agreement to all economies that are able to meet its high standards."

7. The ROK's Trade Minister Inkyo-Cheong said, "The ROK will make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DEPA while acting as a bridge between founding and new members as the first non-founding member country." Trade Minister Cheong also added, "The ROK will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between members to ensure DEPA will serve as a platform to enhance economic partnership."

## **Background**

8.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signed the DEPA in June 2020. The ROK formally applied to join the DEPA in September 2021. The AWG to oversee its accession process was formed in October 2021, with Singapore as Chair.

**Jointly issued by the Undersecretaria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hi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 **ANNEX A: Photo**

For media queries, please contact:

[For Chile]  
Lican Martinez  
Vice Minister Cabinet Assistant  
Undersecretary of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Email: [mmartinez@subrei.gob.cl](mailto:mmartinez@subrei.gob.cl)

[For New Zealand]  
Spokespers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mail: [media@mfat.govt.nz](mailto:media@mfat.govt.nz)

[For Singapore]  
Sarah Wong  
Assistant Director  
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Divisio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Email: [sarah\\_wong@mti.gov.sg](mailto:sarah_wong@mti.gov.sg)

[For ROK]  
Suyeon Choi  
Foreign Media Spokespers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mail: [motiefmso@gmail.com](mailto:motiefmso@gmail.com)

2024년 5월 3일

##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관한 공동 보도자료

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원회원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 DEPA의 첫 번째 신규 회원국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의 가입 절차 완료

2.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가입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2023년 6월 대한민국 가입 협상의 실질 타결 발표 및 이후 DEPA 가입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 완료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3. DEPA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야심찬 규범을 당사국들에게 약속합니다. 또한 상호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입은 이 협정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DEPA의 확장은 협정의 영향력을 높이고 당사국 간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DEPA 회원국의 의견

4. 클라우디아 산후에자 칠레 국제경제관계 차관은 “칠레는 오늘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한 첫 번째 DEPA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입 발효는 DEPA 협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DEPA의 잠재력을 높이고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 분야에서 상호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협업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5.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통상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의 DEPA 공식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가입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진 국가들을 위한 선구자 협정으로서 DEPA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 장관 겸 통상관계 장관은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 DEPA의 네 번째 당사국이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는 DEPA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DEPA를 통해 싱가포르와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입작업반(AWG)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 가입 절차 내내 DEPA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모멘텀을 살려 DEPA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DEPA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7. 동 행사에서 정인교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한민국은 DEPA의 첫번째 추가 가입국으로서 원회원국들과 신규 가입국들간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증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배경

8.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2020년 6월에 DEPA에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9월에 DEPA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가입 절차를 관할하는 가입작업반(AWG)은 2021년 10월에 싱가포르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구성되었습니다.

칠레 외교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행했습니다.

## 부록 A: 사진

미디어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칠레]

리칸 마르티네즈

외교부 국제경제부 차관보, 커뮤니케이션국. 언론 담당 부서장

이메일: csanchez@subrei.gob.cl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메일: media@mfat.govt.nz

### [싱가포르]

사라 웡

통상산업부 커뮤니케이션부 부국장

이메일 Sarah\_wong@mti.gov.sg

### [대한민국]

최수연

산업통상자원부 외신대변인

이메일: motiefmso@gmail.com

### 참고 3

## DEPA 가입 의의 및 주요내용

□ (의의) DEPA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및 글로벌 규범 정립 측면의 주도적 역할 기대

\* 現 중국캐나다(22.8월)·코스타리카(23.12월)·UAE(24.1월) 가입개시, 페루(23.5월), 엘살바도르(24.4월) 가입의사 표명 → 아세안(상)·대양주(뉴)·중남미(칠) 外 동북아(중)·북미(캐)·중동(UAE)으로 확대 기대

○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 전자화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촉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조건 마련

□ (내용) 협정문은 서문·본문(16개 모듈) 및 부속서(분쟁해결절차 관련)으로 구성되며, 개정의정서(protocol)가 일부 조항\*을 대체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암호기법 ICT 제품, 국경간 정보전송, 컴퓨터 설비 위치

○ ▲ 전자상거래 원활화, ▲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체계 규정

○ CPTPP 및 한-싱 DPA 규범 수준으로 국별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며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협력 이슈 포함(시장 개방과 무관)

### < DEPA 주요 내용 >

분야	규범	협력
전자상거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없는 무역</li> <li>▲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li> <li>▲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 ▲ 특송화물</li> <li>▲ 전자송장, 전자결제</li> </ul>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li> <li>▲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li> <li>▲ 스팸메시지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보안 협력</li> <li>▲ 온라인 안전</li> <li>▲ 인터넷 접근 및 이용원칙 등</li> </ul>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 정보이전 원활화</li> <li>▲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li> <li>▲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li> <li>▲ 암호화 ICT 제품에 특정 암호기술 요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 및 윤리거버넌스 협력</li> <li>▲ 경쟁 정책 협력</li> <li>▲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SME 대화</li> <li>▲ 데이터 혁신</li> <li>▲ 핀테크 협력</li> </ul>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확보 등 안전장치 마련

## ① 전자상거래 원활화

- ① **(종이 없는 무역)**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역 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협력
  - 전자무역문서 활용을 촉진하여 문서처리·물류비용 절감, 통관 시간 단축 등 효율성 증진
- ② **(특송화물)** 투명하고 일관된 신속통관 절차 마련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물품 기준(최저 면세한도) 설정
  - 대부분(99% 이상) 특송화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및 면세를 제공하여 B2C(직구) 거래지원 강화
- ③ **(전자지급)**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
  -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상대국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

## ②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 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국경간 정보이전을 촉진하는 매커니즘 도입 및 확장 노력
- ②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법집행에 협력
- ③ **(스팸 메시지)** 수신자의 사전동의 및 수신 거부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 ④ **(안전한 보안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 ③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 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
  - ※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 지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사로 자유롭게 이전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 및 가치 창출 도모 가능
- ②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터 설비를 데이터를 획득하는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 ※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현지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 등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진출 비용 절감
- ③ **(디지털제품 비차별)**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제품과의 차별적 요건 부과를 금지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여건 확보
- ④ **(암호기법 ICT 제품)**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해외 ICT 제품\*에 대해 암호기술 공개, 특정 암호기술 사용 등 요구 금지
  - \* 케이블 TV, 디지털 셋탑박스, 스마트 미터기 등이 해당되며, 상업용 제품에 한정
- ⑤ **(정부데이터 공개)**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 제공

### ④ 디지털 신기술 등 협력 확대

- ① **(AI 협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및 도입에 협력
- ② **(핀테크 협력)** 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핀테크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기업 역량 강화 등 기업 중심의 협력 증진
- ③ **(디지털 ID)** 자국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 등)를 상대국에서 상호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 동조화를 위해 협력
- ④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 및 플랫폼 활용 확대를 장려하고,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디지털 SME 대화 개최